증포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목표) 증포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글로벌시대의 꿈을 키우는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증포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교육목표로 한다.
	(신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제28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신설)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